

언어정책과 언어법제화의 양상

변 명 섭*

目 次

- I. 서 론
- II. 언어정책의 유형
- III. 언어법제화의 방향
- IV. 결 론

I. 서 론

일반적으로 국가의 형성과 그 국가의 언어계획은 동일시되었다. AD 950년에 소위 국어(national language)라고 칭할 만한 수는 6개(Latin, Greek, Hebrew, Arabic, Anglo-Saxon, Church Slavic)였던 것이, AD 1250년에는 17개(English, Dutch, Polish, Magyar, Turkish 등이 첨가됨)까지, 19세기까지는 30개, 1937년에 53개로까지 증가하였다 (Deutsch 1968). 현재, 전 세계 200여 국가에서 6,800여 개 정도의 언어가 사용 중에 있으며,¹⁾ 세계 인구의 70%가 11개 정도의 언어에 몰려 있다.²⁾ 이 중에서 대략 50여 개 국가가 언어와 관련한 법률이나 여러 가지 적극적 또는 소극적 형태의 언어관련 규정들을 헌법(constitution), 법령(statute), 언어법(language law), 조례(act), 의안(bill), 포고(degree), 명령(order), 선언문(declaration), 규정(regulation), 결의안(resolution), 판결(decision), 벌금제도(penalty) 등의 형태로 입법화하고 있다.³⁾

* 제주대학교

- 1) 전 세계 언어의 수는 약 4,000개에서 8,000개로 추정되며 이렇게 큰 오차범위를 보이는 것은 언어와 방언 사이의 경계에 대한 서로 다른 민족적, 사회적, 인종적, 역사적, 정치적 적용 기준의 차이 때문이다.
- 2) 언어 인구수는 대략 Chinese(10억), English(5억), Hindi(4억), Spanish(4억), Russian(2억), Bengali(2억), Portuguese(2억), Arabic(1억), German(1억), French(1억), Japanese(1억) 등의 순이다 (Godby et al. 1982, Grosjean 1982).

역사적으로 볼 때, 정치적 개념의 새로운 국가의 탄생이거나, 또는 다른 민족국가의 일부로 남아 있는 지역은 정치적, 문화적, 사회적 통합(national unity)의 상징으로, 그리고 민족의 정체성(national identity)을 표방하기 위해 새로운 언어계획의 수립이 따랐으며, 이는 대부분 민족주의(nationalism)의 표현이기도 하였다.⁴⁾ 한 언어의 법안이 채택되는 과정과 그 결과는 국가들마다 정치적(political), 사회적(sociological), 인종적(ethnic), 종교적(religious), 역사적(socio-historical), 교육적(educational), 경제적인(economical) 사연에 따라 서로 다르며, 때로는 이들 요소들간의 갈등, 조정, 분리, 투쟁의 양상을 띠며, 어느 언어로 어느 만큼의 법적 지위를 결정하느냐(status planning) 하는 문제는 한 언어의 언어학적(linguistically significant) 정당성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the politics of language or the sociology of language) 결정의 과정이며 결과이다. 또한 이런 언어정책에서 소외되거나 제외되는 민족, 인종, 지역, 또는 자치단체는 그들 언어의 지위박탈에 대한 언어권리(language rights)를 회복하기 위해 투쟁하기도 한다.

언어학(linguistics)의 연구는 언어 내적인 구조(language structure) 자체에 대한 연구(예를 들면, 음성학, 음운론, 통사론, 의미론, 언어사)일 경우는 순수 이론언어학(theoretical linguistics)의 범주에 속해 인문과학의 영역에 속하지만 언어와 언어 외적인 요인들(extralinguistic factors)과의 관련성을 연구하면 응용언어학(applied linguistics)의 범주에 속한다. 응용언어학은 언어학과 인접학문과의 상호관계에 대한 연구이다. 특히 언어와 사회에 관련한 언어학의 연구를 사회언어학(sociolinguistics) 또는 언어사회학(the sociology of language)이라고 하며, 이 둘 중 언어영역을 더 강조하면 사회언어학(sociolinguistics)의 영역이고, 정치나 사회적 요인들을 더 강조하면 언어사회학(the sociology of language)의 영역에 속한다. 언어사회학은 언어정치학(the politics of language)이라고도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언어정책(language policy) 및 언어계획(language planning)의 분야는 언어자체의 객관적, 과학적 분석에 의한 우열의 판단에서가 아니라 주관적, 사회적, 정치적 관점의 언어 외적인 요인에 따르는 결정으로 거시적 언어사회학(macro sociology of language)의 영역이며 사회과학의 영역에 더 가깝다

3) Albania, Algeria, Armenia, Austria, Azerbaijan, Belarus, Belgium, Bosnia & Herzegovina, Bulgaria, Croatia, Cyprus, Estonia, Finland, Georgia, Germany, Greece, Hungary, India, Indonesia, Ireland, Italy, Kazakhstan, Kyrgystan, Latvia, Luxembourg, Marcedonia, Moldova, Netherlands, Nigeria, Norway, Pakistan, Poland, Portugal, Romania, Russia, Singapore, Slovakia, Slovenia, South Africa, Spain, Sri Lanka, Sudan, Sweden, Switzerland, Syria, Tajikistan, Turkey, Ukraine, Uzbekistan, Yugoslavia 등이다 (The U.S. English Foundation 2000).

4) 예를 들면, Finnish, Welsh, Norwegian, Romanian, Bulgarian, Ukrainian, Irish, Breton, Basque, Georgian, Hebrew 등이 이 범주에 속한다.

(Hudson 1980).

이 연구에서는 몇몇 대표적인 국가들의 언어선택(language choice)과 관련하여 그들의 언어정책과 언어법제화의 양상들을 살펴보고 그와 관련된 정책적 요인들을 분석해 보기로 한다.

II. 언어정책의 유형

“한 개 국가에 한 개 국어”라는 슬로건은 모든 민족국가들의 목표이고 이상이지만 그 국가를 구성하는 인종분포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서로 다른 인종들도 구성되어 있어도 한 개의 언어 밖에 없는 국가들은 문제가 없지만 인종마다 각각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세계적으로 일반적인 현실이고, 이들 언어 중에서 어느 것으로 한 국가의 국어 또는 공용어로 하느냐의 문제는 각 국가들마다 사정이 서로 다르다.

엄밀한 의미의 단일언어사용 국가는 없지만 대체로 한 나라에서 단일인종의 인구비율이 90%를 넘는 나라는 유럽의 오스트리아(99%), 포르투갈(98%), 그리스(98%), 스웨덴(98%), 폴란드(98%), 헝가리(97%), 아이슬란드(97%), 아일랜드(97%), 덴마크(96%), 노르웨이(96%), 알바니아(95%), 몰타(95%), 네덜란드(94%), 프랑스(94%), 이탈리아(94%), 핀란드(93%), 아르메니아(93%), 독일(92%), 슬로베니아(91%), 아시아의 한국(100%), 몰디브(100%), 일본(99%), 부탄(98%), 중동의 유나이티드아랍에미레이트(98%), 요르단(98%), 예멘(98%), 사우디아라비아(96%), 아프리카의 레소토(99%), 마다가스카르(97%), 소말리아(95%), 남미의 아이티(99%), 바바도스(98%), 브라질(98%), 쿠바(98%), 도미니카(98%), 자메이카(98%), 콜롬비아(97%), 코스타리카(97%), 트리니다드(97%), 니카라과(96%) 등이다 (Rustow 1968, The U.S. English Foundation 2000).

이들 국가 중에서 단일 인종에 단일 언어를 표방하는 나라로서 비교적 언어갈등에서 자유로운 나라는 한국과 일본 뿐이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약 100만 명 이상의 아이누(Ainu)(15,000명), 한국인(67만 명), 중국인(15만 명), 필리핀, 태국, 파키스탄, 이란,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등 동남아시아의 노동자들(30만 명 이상)로 구성된 소수민족이 전체 일본 인구의 거의 1%를 차지하며 일본 정부의 이들 소수민족 언어정책은 배타적이고 공식적으로 단일 일본어 정책이지만 현실은 제한적으로 이중언어 사용 국가에 속한다(Grosjean 1982). 따라서, 진정한 의미의 단일 민족과 단일 언어의 관점에서 볼 때 한국만이 세계에서 가장 ‘단일’해 보인다. 다만, 남북한의 분단에서 오는 언어정책만이 갈등의 여지로 남는다.

이처럼 몇 나라들을 제외하고는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가 크고 작은 소수민족들과 언어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결과 두 개 이상의 이중언어(bilingual) 또는 다언어(multilingual) 사회를 형성한다. 이들 다언어 국가들은 군사적 정복, 식민지화, 인종과 정치적 합병, 지리적 환경, 교육적 효과, 경제적 이점 등에 따라 각 언어마다 서로 다른 지위(status)와 권리(rights)를 부여하고 있으며, 그 결과 정치적 국경과 언어적 국경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Cobarrubias(1983)는 언어계획의 기준이 되는 이념적 척도를 ① 동화의 원칙(linguistic assimilation), ② 다원성의 인정(linguistic pluralism), ③ 민족언어의 우선(vernacularization), ④ 중립언어의 채택(internationalism) 등 4가지로 구분하였다.

1. 동화의 원칙(linguistic assimilation)

보통 한 나라에 섞여 있는 소수민족과 언어(linguistic minority)는 그 나라에의 위협으로 인식된다. 분리주의, 민족주의, 지역주의, 심지어는 독립국가를 지향하면서 불안정의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 때 소수민족은 그들의 언어를 민족의 상징으로 삼는다. 이 때문에 타지역에서 이주해온 이주민들은 자신의 언어와 문화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다수민족(majority)의 언어와 문화에 동화해야 한다는 원칙을 채택한다. UNESCO와 UN의 소수민족에 대한 언어권리(language rights) 선언과는 배치되지만 이 정책이 갖는 장점과 단점의 논쟁은 치열하다. 이 정책을 지지하는 대표적인 나라는 프랑스다. 미국은 동화의 원칙에 입각한 영어공용어화(English Only) 정책과 소수민족의 언어와 문화의 권리를 인정하는 이중언어(English Plus) 정책사이에서 아직도 논쟁이 진행되고 있다.

프랑스의 헌법 제2조(국가의 형태와 상징) 2항은 불어가 프랑스의 국어(공용어)임을 규정하고 있다.⁵⁾ 프랑스의 인종 분포는 French(93.6%), German(2.6%), Breton(1.0%), Catala(0.4%), Arabic(2.5%), 기타(3.9%)로 구성되며, 언어로는 불어 외에 Provencal, Breton (450,000명), Alsatian, Corsican(170,000명), Catalan(102,000명), Basque, Flemish (40,000명), Occitan(400,000명), Oil 등이 있어 급속히 소멸되어 가는 형편에 있다. 프랑스 인구의 약 6%가 불어와 이들 중 한 언어와 이중언어사용자(bilingual)이다(Grosjean 1982).

앵글로색슨족의 영국점령(AD 449)으로 쫓겨난 켈트족들의 집단 거주지역인 프랑스

5) Article 2 (State Form and Symbols): (2) The language of the Republic is French.

의 브리타니 반도에 살고 있는 Breton족들은 프랑스로부터의 독립은 아니더라도 자치주 만으로라도 독립하려는 운동에서 켈트어의 하나인 Breton어가 그들의 정체성의 상징이다. 프랑스 정부가 그들의 문화와 언어권리를 인정하면 동시에 불어도 함께 유지하겠다는 것이 그들의 희망이다. 언어의 법적 지위는 인정되지 않고 있지만 임의로 최근 도로표지판이 등장했고 지방방송과 지방신문에서 약간의 Breton 언어사용이 눈에 띄게 증가하는 정도이다. 학부모들의 자발적인 기금조성으로 자생적인 유치원, 초, 중등학교가 생겨나는 정도이며 교육은 불어와 Breton의 이중언어로 이루어진다.

Catalan의 경우도 임의로 거리 이름, 시청 게시물, 공사립 교육에서 간헐적으로 사용하며, 지방방송에서 2주에 10분씩 Catalan으로 방송하는 정도이다. 1981년부터 한 개의 Catalan 방송국이 임의로 운영되고 있다. Corsican의 경우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Corsican 사용자이면 비공식적으로 Corsican을 사용하며 지역 라디오 방송이 5-10분씩 매일 몇 개의 프로그램을 내보내며, 지역TV는 주당 2시간씩 Corsican 방송을 한다. Basque의 사용은 도로표지판에서 보이는 정도이고, 1951년의 Deixonne Law에 따라 유치원에서 초등3년까지는 선택과목으로만 가르칠 수 있다. 프랑스 국영TV가 하루에 1-2분씩만 Basque로 방송하며, 3개의 지역방송이 Basque로 종일 방송을 한다. 최근에는 공공기관을 통한 Basque 장려방안이 제안되었으며 이는 민족주의의 요구로 이해되고 있다. Occitan은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공립 이중언어학교에서 학과목으로만 가르치며, 중등에서는 선택과목으로만, 대학에서는 Occitan 어문학과로만 가르칠 수 있다. 공영TV가 주당 40분 가량 일요일에만 Occitan으로 방송하며, 한 개의 주간지가 있을 뿐이다. 기타 소수민족언어의 위치는 언급하기에 미미한 정도이다.

프랑스는 독일정부와는 달리 European Charter for Regional or Minority Languages에 서명했으나(1999. 5. 7), 아직 비준이 안된 상태다. 프랑스 헌법위원회가 비준을 반대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프랑스내의 소수민족 대표들이 항의하였다.⁶⁾

1994년의 프랑스 언어법은 프랑스 내에서 프랑스인 들의 불어사용 범위를 정하고 있다.⁷⁾ 이 법의 특징은 보다 엄격하고 넓은 범위에서 불어의 사용을 강제하고 있다. 특히, 영어의 침투를 막고, 외래어의 불어화로 전환과, 상품과 설명서에서의 불어사용 의무, 언론매체들의 불어사용 범위, 외국인과의 불어사용 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률로 영어 간판이 철거되자 영국정부는 이에 대항하여 불어에 대한 상응조치를 취했다. 이렇게 프랑스는 소수민족 언어의 보호에는 소극적 정책을, 불어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의무사용을 강요함으로써 동화의 이념을 실현하고 있는 나라이다.

6) <http://www.troc.es/ciemen/mercator/index-gb.htm>.

7) Law No. 94-665 of 2 August 1994 Relative to the Use of the French Language.

미국은 푸에르토리코(Puerto Rico)에서 1948년 자치령으로 독립할 때까지 영어사용을 의무화했고,⁸⁾ 괌(Guam)에서는 1973년까지도 원주민 언어인 Chamorro를 억압하였다. 필리핀에서는 독립 때까지 영어사용언어정책을 폈었다. 국내적으로는 특별한 언어정책이란 것은 없었으나 이중언어 교육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면서 그 의미와 효과에 대한 논쟁이 언어정책이 되었다. 1980년대의 통계에 의하면 미국 인구의 38%가 소수민족 언어사용자이고, 인구의 37%가 영어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정책은 국익이란 것이 무엇이고, 동시에 어느 것이 민주적 전통을 유지하는 방향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소수민족의 언어는 위협이며 그 사용을 제한하고 동화정책을 채택하여야 하는가, 아니면 다양성은 오히려 자산가치로서 소수민족들의 언어 또한 보존하면서 영어를 배울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고 그들의 언어의 권리를 인권만큼이나 지켜줄 것인가의 결정이 미국의 언어정책의 본질이다.

현재 미국은 법적으로 공용어가 없으며, 관행상 영어가 공용어 역할을 한다. 1981년에 처음으로 영어 공용어화(English Only)를 시도하기 위한 영어입법안(English Language Amendment)이 등장하였다. 이 법안이 통과되어 영어가 미국의 공용어가 되려면, 하원과 상원에서 각각 2/3의 찬성을 받고, 다시 전체 52개 주 중에서 3/4에 해당하는 수인 39개 주 의회의 비준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는 52개 주 중에서 21개 주에서만 English Only 법을 가지고 있다.⁹⁾ 아리조나주(Arizona)는 1988년에 English Only 법을 통과시켰으나 제28조의 위헌(unconstitutional)조항으로 1998년에 주 대법원에서, 그리고 앨라스크주(Alaska)는 1998년에 English Only 법을 통과시켰으나 앨라스크 주법에서 정한 언론자유를 침해한다하여 상급법원(superior court)에서 2002년 기각되었다(Reuters News Service, March 26, 2002).

8) 푸에르토리코(Puerto Rico)는 1948년 미국의 자치령(self-governing part of USA)이 된 후 당시의 투르만(Truman) 대통령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스페인어가 기본 교육언어(medium of instruction)가 됨. 현재는 스페인어와 영어가 동시에 공용어이고, 전 인구(약 400만 명)의 90%가 스페인어 사용자임. 이 중에서 영어사용 가능자(first and second language speakers)는 약 40만 명임.

9) English Only 법을 채택한 21개 주(states)와 법안유형 및 연도: Alabama(constitutional amendment, 1990), Arkansas(statute, 1987), California(constitutional amendment, 1986), Colorado(constitutional amendment, 1988), Florida(constitutional amendment, 1988), Georgia(ceremonial resolution, 1986), Illinois(statute, 1969), Indiana(statute, 1984), Kentucky(statute, 1984), Missouri(statute, 1998), Mississippi(statute, 1987), Montana(statute, 1995), Nebraska(constitutional amendment, 1920), New Hampshire(statute, 1995), North Carolina(statute, 1987), North Dakota(statute, 1987), South Carolina(statute, 1987), South Dakota(statute, 1995), Tennessee(statute, 1984), Virginia(statute, 1981), Wyoming(statute, 1996) (James Crawford: "English-Only Movement". Website: <http://ourworld.compuserve.com/homepages/jwcrawford>).

English Only 정책은 국민통합(unity), 비용절감(money-saving), 이주민의 경제능력 제고(economic empowerment)의 장점이 있다는 것이 법안제안 취지이고, 반대론자들은 English Only 법은 통합보다는 차별을 더 강화할 뿐이고, 영어를 잘 못하는 이주민의 취업 기회를 더욱 어렵게 하는 것이고,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며, 비용 절감보다는 오히려 정부와 일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것이며, 따라서 English Only 법은 불필요하다(unnecessary)고 주장한다.

영어공용어화의 실제적 이념은 이러한 실용성의 측면보다는 미국을 소수민족의 복합체가 아닌 단일국가로의 정체성과 상징을 표방함이며, 유사시의 안전보장, 동화(assimilation)를 촉진하기 위함이다. 미국 건국 초기의 헌법제정 과정에서도 일반적으로는 “같은 언어를 말하는”(speaking the same language) 국가가 미국의 이념이었다. 여기에서 인종과 언어의 다양성은 심각하게 논의할 정도까지 문제되지 않았다. 1757년 Benjamin Franklin 대통령은 독일인의 증가와 독일어가 앵글로아메리카의 건국정신과 정치구조까지도 위협하지 않을까 염려했고, 1803년 Thomas Jefferson은 프랑스와 불어의 팽창을 염려했다. 1850년대에는 캘리포니아주 등에서 반 카톨릭, 반 이민 운동으로 중국인들에 대한 공격과 제한이 있었으며, 1880년대에는 위스콘신주와 일리노이주에서는 일정한 장소에서의 독일어 사용금지 법안이 생겨났다. 20세기에는 미국화운동(Americanization)으로 독일어, 일본어, 한국어, 중국어, 스페인어 등에 대한 반대운동이 있었고, 1926년에는 캘리포니아주와 하와이주에서 일본어, 한국어, 중국어의 교육을 금지시키려는 법안이 법정(Ninth Circuit Court of Appeals)에서 무효화되었다. 1910년 뉴멕시코주에서는 스페인어 교육을 금지하려는 English Only 정책에 대한 반대운동의 결과로써 스페인어-영어의 이중언어 교육정책의 기반이 되는 반 차별 법안이 채택되었다(Thomas Ricento, “A Brief History of Language Restrictionism in the United States”. Website: <http://www.ncela.gwe.edu/mispubs/tesol/official/restrictionism.htm>). 이렇게 영어가 아닌, 소수민족언어를 제한하려는 여러 유형의 입법시도는 무산되었고, 그래서 공식적인 법 규정은 없지만 미국은 여전히 관행상으로는 영어가 공용어이다.

2. 다원성의 인정(linguistic pluralism)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소수민족들의 인종, 언어, 종교, 풍습의 차이(difference)는 부정하고 대조(contrast)를 강조하는 이념으로서 여러 소수민족언어에 동등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다수의 공용어를 인정한다. 150년간의 언어분쟁을 겪은 벨기에는 100만 인구 중 57.5%는 게르만계의 플라망어(Flemish, 화란어의 방언)권으로 벨기에의 북

부지방에, 32.5%는 라틴계인 왈롱인들(Walloon)의 왈롱어(불어의 방언)권으로 벨기에 남부지방에 주로 거주한다. 수도 브뤼셀(Brussels)은 플라망 지역임에도 주민의 80%가 불어를 사용한다. 1830년 독립 당시 인구수로는 플라망어 사용자가 많았으나 엘리트 그룹은 불어를 사용했다. 경제적으로 뒤졌던 북부(플라망어 지역)와 산업화된 남부(왈롱어 지역)로 대조를 이루는 가운데 당시 국제어 역할을 했던 불어는 사회, 교육, 교회, 행정의 언어였다. 1883년 플라망인들의 압력으로 북부지방의 학교에서는 플라망어가 도입되었다. 1898년에는 공공서류들이 2개언어(불어, 플라망어)로 나오기 시작했고, 수적으로 많은 인구수를 가진 북부지방의 플라망인들의 투쟁으로 플라망어도 불어와 동등한 언어권리를 확보하였다. 2차대전 후 인구가 더 많은 북부의 플라망 지역이 남부의 왈롱 지역보다 경제적으로 더 성장하였다. 브뤼셀은 불어권인데도 플라망어 지역인 북부의 영토 안에 위치해 있어 두 민족들에게는 똑같이 갈등의 요인이 되었다. 이렇게 벨기에 정부의 모든 정치는 곧 두 언어권의 이해관계를 의미했고, 수 차례의 정부전복으로 이어졌다(Grojean 1982, Fasold 1984, Hamers et al. 1989, Wardhaugh 1992, Holmes 2001).

1970년 벨기에는 전 지역을 4개의 언어권, 즉 불어 지역(인구의 32.5%), 플라망어 지역(57.5%), 불어와 플라망어 양 언어 공동사용 지역(브뤼셀)(9%), 독일어 지역(1%)으로 나누었다. 양 언어 공동사용 지역인 브뤼셀에서는 예를 들면, 한 우체국 안에 불어 창구와 플라망어 창구로 이원화된다. 방송, 출판, 신문, 교통표지판에는 2개의 언어가 사용되고, 국왕이 연설할 땐 한번은 플라망어, 한번은 왈롱어로 한다. 벨기에 국회는 1993년 1월 6일 헌법 1조로 개정안을 통과시켜 벨기에를 “벨기에 연방”으로 바꾸기로 했으며 국방, 외교, 주요 경제정책만 연방정부가 맡는다(Grojean 1982). 따라서 벨기에는 불어, 플라망어, 독일어 등 3개의 공용어가 있으며, 각 지역마다 각자의 공용어로 교육과 행정을 처리한다. 그 결과 국가 전체의 행정 업무가 복잡하며, 서로 다른 민족의 정체성이 강조되고, 전 국민의 동화나 통합은 추구되지 않는다.

캐나다 전체인구(2,600만명) 중 약 45%가 영어를, 약 29%가 불어를 사용한다. 불어권은 퀘벡(Quebec)과 뉴브run스윅(New Brunswick) 지역이고, 퀘벡 인구의 87%가, 뉴브run스윅의 34%가 불어 사용자이다. 17C초 퀘벡에 영국인과 프랑스인이 처음 이주했을 때는 상호결혼도 이루어지고 이중언어지역으로 비교적 평온했으며 1762년까지는 영국인이 200만명, 프랑스인은 8만명이 되었다. 1763년의 파리조약으로 프랑스는 캐나다 내 영토를 포기하였다. 이후 200년 동안 캐나다의 불어권은 언어학적으로나 문화적으로 홀로 운명을 개척해야 했다. 1774년의 Quebec Act는 종교와 제도를 인정하였고, 1867년의 Confederation Act 법은 캐나다 주 정부의 자치를 부여했으나 프랑스계 캐나

다인들은 퀘벡주의 통치에 권한이 없었다 (Grojean 1982, Fasold 1984, Hamers et al. 1989, Wardhaugh 1992, Holmes 2001).

프랑스계가 시골에서 교회중심 생활에 은둔하는 동안 영국계들은 정치적, 경제적으로 지배세력이 되었으며, 1960년대까지 프랑스계는 2등 국민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퀘벡 지방에서조차 영국계가 프랑스계를 경제적으로 지배했으며, 영어가 불어보다 우세했고, 영어를 잘하는 프랑스계들만이 경제적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퀘벡주 내의 이중언어사용자들(13%) 중에서도 프랑스계가 영어와의 이중언어사용자가 되어야 할 입장이었다. 퀘벡주에 있는 영국계들 중 8% 만이 영어-불어의 이중언어사용자로서 33%의 프랑스계 이중언어사용자들과 대비된다 (Grojean 1982, Fasold 1984, Hamers et al. 1989, Wardhaugh 1992, Holmes 2001).

1963년 캐나다에 Royal Commission on Bilingualism and Biculturalism 위원회가 설립되고, 1968-1969년에는 Official Languages Act가 통과되어 캐나다에서는 영어와 불어가 법적으로 공용어(official languages)가 되었으며 연방에서 동등한 권리를 부여받았다. 그러나 문제는 이 두 공용어는 제도적으로는 동등한 권리를 갖고 있지만(institutional bilingualism) 각 주의 교육, 언론매체 등에서의 불어에 대한 차별에서 보는 것처럼 개별적(personal bilingualism) 언어환경에서는 동등하지 않다는데 있다. 1970년대부터는 퀘벡주에서조차 다수를 차지하는 프랑스계 사이에서도 경제적 이유로 불어가 아닌 영어가 생활을 지배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자 1977년 퀘벡 주 정부는 Chartre de la Langue Francaise에 따라 불어를 퀘벡주의 유일한 공용어로 선언하였다. 이에 따라 경제활동, 교육, 행정 등은 모두 불어로만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후, 언어사용 규칙 위반자들을 단속하는 수 백 명의 언어경찰들 이야기는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가장 강력한 조치(draconian measures)로 자주 인용되기도 한다. 영어에 관해서는 부모가 과거에 영어로 교육받은 경력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을 때만 그 자녀가 영어교육을 받을 권리를 인정해주었다. 1994년 캐나다 퀘벡주 지방의회선거에서 주의 분리 독립을 주장하는 퀘벡당이 승리함으로써 캐나다는 연방와해의 위기감에 놓이기도 했다 (Grojean 1982, Fasold 1984, Hamers et al. 1989, Wardhaugh 1992, Holmes 2001).

벨기에와 캐나다의 언어정책에서 보는 것처럼 한 국가의 언어정책에서 서로 다른 소수 인종의 언어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모든 국민에게 모든 언어(공용어)의 실질적 언어사용을 동등하게 적극적으로 권장하기 위해서라기 보다는 인종간, 언어간의 갈등을 완화하기 위하여 정치적 국경내의 모든 언어집단을 법적으로 동등하게 인정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와 같은 유형의 언어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은 싱가포르, 남아프리카공화국, 스위스, 스리랑카, 키프러스 등이다.

3. 민족언어의 우선(vernacularization)

원주민(토착민)들의 언어를 제1언어로 채택하여 복구(restoration)하거나 제발(elaboration)하여 법적으로 공용어화 하는 것이며, 민족의 통합, 단결, 상징, 정체성 확립이 그 이념이다. 대체적으로 공존하는 다른 공용어에 비해 실용성은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탄자니아(Tanzania)와 아일랜드(Ireland)가 대표적인 나라이다.

탄자니아(인구 3200만명)의 공용어는 스와힐리어(Swahili)와 영어이다. 탄자니아에는 135개 정도의 원주민어가 존재하며 전 인구의 94%가 Bantu계통 언어를 사용한다. Bantu 계통 언어의 하나인 스와힐리어는 17C 중엽부터 아랍권과의 주요 통상언어로 쓰였으며 현재는 아프리카 대륙의 대표적 공통어(lingua franca)¹⁰⁾ 역할을 한다. 1890년경부터 세계1차대전까지 식민통치를 했던 독일과 그 후 식민통치를 이어받은 영국은 계속 스와힐리 언어정책을 이어갔으며, 영어는 정치언어로서, 스와힐리어는 국내 의사소통의 창구로서 역할을 하였다. 탄자니아의 독립운동에서 스와힐리어는 투쟁의 동반자이며 수많은 원주민 언어의 공통어의 상징이었다. 1961년 독립과 함께 탄자니아는 스와힐리어를 국어로 정했다가 1967년에는 동시에 공용어 지위를 부여하였다(Fasold 1984).

탄자니아가 스와힐리어를 국어 및 공용어로 채택하게 된 요인으로는 그 언어의 토착성, 어느 특정한 지배 세력의 원주민 집단의 언어가 아닌 점, 공통어로서 아프리카 전역에 널리 알려진 점, 다수 원주민 집단의 언어와 같은 언어계통인 점 등이 고려되었다. 영국의 식민통치에서도 영국은 스와힐리어를 초등교육에서, 그리고 영어를 고등교육현장에서 사용했었다. 1967년부터 초등교육에서는 스와힐리어만 인정되었다. 중등교육과 대학교육은 과도기적으로 영어가 사용된다. 탄자니아에서는 개인적 용무이외엔 국어인 동시 공용어인 스와힐리어는 국회, 법정, 정당, 지방의회 등의 언어이다. 정부관리를 모국어가 서로 다른 지역으로 진출시킴으로써 공통어 역할의 스와힐리어를 사용할 수 밖에 없도록 하고,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원주민 집단을 만들어 그들 사이에서 스와힐리어만을 사용하는 언어환경을 만들기도 하였다(Fasold 1984). 탄자니아의 언어정책의 성공요인은 선택된 스와힐리어가 진정한 민족주의의 언어이며, 탄자니아인의 상징였으며, 문서상으로만 보장되는 형식적, 법률적, 정치적 선언이 아닌 모든 인종에의 실질적인 공용어였다는 점이다.

아일랜드의 공용어는 영어와 아일랜드(Irish)로서 두 언어 모두 동등한 법적 지위를

10) UNESCO(1953) defined a *lingua franca* as 'a language which is used habitually by people whose mother tongues are different in order to facilitate communication between them' (Wardhaugh 1992, p. 56).

가지고 있다. 본래 아일랜드인은 켈트족으로서 인도-유럽어계통인 켈트어의 하나인 게일어(Gaelic이라고도 하고 Irish Gaelic이라고도 함)를 사용하였으며, 앵글로색슨족으로서 영어를 쓰는 영국과는 인종, 문화, 언어가 서로 다르다. 아일랜드는 12세기말부터 1922년 독립 때까지 영국의 지배를 받는 동안 영어로 완전히 동화되었으며, 전 인구(360만) 중 2-3%(75,000명)만이 아일랜드어가 모국어일뿐이고, 13%(26만명)는 아일랜드어가 제2언어(second language) 수준이다(Fasold 1984). 오랜 영국의 통치로 인해 영어가 사실상의 공용어로 굳어진데다 대부분의 아일랜드인 스스로가 경제적 가치가 거의 없는 아일랜드어의 습득을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Fasold 1984).

아일랜드 헌법(1937년 7월 1일 채택)은 아일랜드어를 국어(national language)인 동시에 제1의 공용어(first official language)로서 규정하고 있다. 의회 업무는 영어로, 법안은 두 언어로,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아일랜드어는 필수지만 그 언어사용은 거의 하지 않으며, 공영방송매체는 아일랜드어 방송이 필수이다. 아일랜드 정부는 현재 Official Language Equality Bill를 통해 모든 영역에서의 동등한 언어 서비스의 제공을 계획하고 있다(The U.S. English Foundation 2000).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아일랜드어의 부활운동은 여전히 미미하며, 실제 언어생활의 유용성보다는 아일랜드인의 정체성과 자존심의 상징일 뿐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경우는 아일랜드와는 대조를 이룬다. 이스라엘의 공용어는 법적 규정은 없지만 관행상 히브리어와 아랍어이다. 이스라엘에는 31개의 언어집단이 있지만 전 국민(약 600만)의 81%(480만)가 히브리어(Hebrew)를 사용한다. 히브리어는 본래 사어(dead language)였으나 1948년 이스라엘 건국 후 글로만 존재하는 성경에 있는 히브리어(Biblical Hebrew)를 구어(spoken language)의 수준으로 완전히 복구된 언어다(Wardhaugh 1992).

이는 이스라엘 정부의 언어정책의 성공사례일 뿐만 아니라 민족의 역사와 생존, 통합, 정체성에 대한 강한 집념인 국민성의 결과이기도 하다. 뉴질랜드(New Zealand)는 세계 4대 영어권 국가들 중 하나이다. 그러나 영어는 공용어로서의 법적 지위를 갖고 있지 않다. 그 대신 소수민족인 마오리족의 언어인 마오리어(Maori)는 법률적으로 뉴질랜드의 공용어이다. 영어는 실제상(de facto)의 공용어이지만 마오리 소수 민족의 문화와 언어를 보호하고 원주민의 정체성을 강조하기 위해 상징적으로 마오리어를 공용어로 규정하고 있다. 필리핀(Philippines)의 타갈로그어(Tagalog), 파푸아뉴기니(Papua New Guinea)¹¹⁾의 토크피신어(Tok Pisin), 페루(Peru)의 퀘추아어(Quechua)등에 부여된 공용어 지위는 모두 민족 정체성의 상징이다. 이들 나라에서는 또 다른 공용어인 영어 또는

11) 파푸아뉴기니(Papua New Guinea)의 인구는 460만명으로 원주민 언어수는 832개이며, 공용어는 Tok Pisin, English, Hiri Motu 등 3개이다.

스페인어가 더 실용적 기능(de facto official languages)을 가지고 있다(Holmes 2001).

4. 중립언어의 채택(internationalism)

토착민의 언어가 아닌 국제적 공통어의 기능을 가진 언어를 공용어로 선택하는 정책으로, 인종간의 갈등을 비켜갈 수 있고, 또 기존 원주민 언어에 대한 선호도가 낮을 때 제3의 언어를 공용어로 채택한다. 인종 분포와 각종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과거 식민지였던 나라들에서 영어를 공용어로 선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싱가포르, 인도, 필리핀, 파푸아뉴기니, 케냐 등의 나라가 이 유형에 속한다.

케냐(Kenya)는 탄자니아의 바로 인접국이면서도 스와힐리어를 공용어로 택한 탄자니아와는 대조적이다. 영국의 식민지였던 케냐가 처음 선택한 공용어는 영어이다. 1974년 스와힐리어가 의회의 언어로 선언되자 거센 항의로 의회가 문을 닫기까지 했다. 영어가 공용어가 된 요인은 서로 다른 인종들간에 세력균형이 비슷했기 때문이다. 각 인종집단의 언어는 그 우열을 비교하는 것이 수적으로나 자존심의 문제로 보나 서로 양보할 수 없는 형편이었다. 그 어느 것을 공용어로 택할지라도 선택되지 않은 언어집단은 그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는 형세였다. 탄자니아의 사회주의 정치이념은 민족언어와 실용성의 상징인 스와힐리어와 부합되었지만 케냐의 정치적 입장은 달랐다. 결국 케냐는 그 어느 인종의 언어도 아닌 식민지배국 언어인 영어를 공용어로 채택하였다(Fasold 1984).

인도(India)는 25개이상의 주에서 18개의 공용어를 인정하고 있지만 연방정부나 서로 다른 주마다 영어나 힌두어(Hindi)를 공용어로 규정하고 있다. 싱가포르(Singapore)는 4개의 공용어를 채택하고 있지만 중국어(Mandarin Chinese), 말레이어(Malay), 타밀어(Tamil)는 소수민족언어를 반영한 것이고, 영어는 중립언어로서 모든 언어집단의 공용어 역할을 한다.

필리핀(Philippines)은 타갈로그어(Tagalog)를 공용어로 정했지만 타갈로그어가 169개 소수민족 언어의 공용어는 되지 못했다. 따라서 영어가 보다 더 광범위한 공용어기능을 한다.

파푸아뉴기니(Papua New Guinea)에서의 공용어인 영어가 800여개 이상의 언어집단간의 중립언어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도 이 유형에 해당된다.

또한 제주국제자유도시(Jeju Free International City)에서의 영어 공용어화 논쟁은 언어가 서로 다른 지구촌 사람들과의 의사소통 수단은 경제적 가치와 공통어(lingua franca)의 기능을 가진 영어로 채택하되 그 법적 지위는 어느 수준만큼 부여할 것이냐

의 의사결정 과정이었다.

III. 언어법제화의 방향

복수의 언어공동체를 가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해집단간의 언어의 권리를 법적으로 어떻게, 얼마만큼 부여하고 제한할지를 결정하게 된다. 각 나라들의 언어법제화의 내용을 보면 크게 몇 가지 방향으로 정책들을 결정하고 있다. 그 유형을 살펴보면, ① 모든 소수민족의 언어권리를 동등하게 인정하는 경우, ② 소수민족언어에 대한 소극적 대응, ③ 제한된 지역에서만 언어권리를 허용하는 경우, ④ 전 지역에서 소수민족언어를 억제 또는 금지하는 경우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전지역에서 소수민족언어 허용

일반적으로 민족 간의 분열과 갈등을 염려하기 때문에 소수민족 언어와 문화를 지원하고 보장하는 국가들은 많지 않다. 그러나 민족 간의 갈등을 보이지 않고 통합에 성공하고 있는 나라들은 국가 전 영토 내에서 모든 소수민족 언어를 동등하게 법적으로 보장하고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이 유형에 속하는 나라들로는 헝가리, 포르투갈, 노르웨이, 키프러스, 아일랜드, 스리랑카, 룩셈부르크, 싱가포르,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이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South Africa)은 모두 11개의 공용어를 법으로 동등하게 규정하고 있다. 인종차별 정책(Apartheid)으로 오랜 역사동안 세계의 이목이 된 남아프리카공화국은 1993년 독립과 더불어 모든 영역에서 차별이 없는 정부를 세우는 것이 국가의 이념이 되었다. 이 정신은 언어정책에도 반영되어 1994년의 헌법은 28개 언어 중에서 11개를 공용어로 규정하였다.¹²⁾ 그러나 이 결정은 평등정신만을 강조했지 언어사용 환경은 비현실적으로 보인다. 그렇다해도 이러한 실제적으로는 비현실적인 언어장벽은 인종차별이 없는 국가건설 이념에는 장애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¹³⁾ 교육현장에서 학생은 원하는 언어를 선택할 수 있고 학교는 의무적으로 그 언어의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¹⁴⁾ 의회에

12) Section 6: (1) The official languages of the Republic are Sepedi, Sesotho, Setswana, siSwati, Tshivenda, Xitsonga, Afrikaans, English, isiNdebele, isiXhosa and isiZulu.

13) Section 6: (2) Recognizing the historically diminished use and status of the indigenous languages of our people, the state must take practical and positive measures to elevate the status and advance the use of these languages.

14) Section 29: (2) Everyone has the right to receive education in the official language or

서는 4개의 공용어를 사용하고, 법정에서는 모국어를 사용할 수 있다(Grimes 2000, The U.S. English Foundation 2000).

다양성(diversity)을 하나로 통합(unity)하는 것이 이념인 싱가포르의 20개의 언어 중 중국어(Mandarin Chinese), 말레이어(Malay), 타밀어(Tamil), 영어(English)를 공용어로 정하고 있으며¹⁵⁾ 말레이어는 국어(national language)이고¹⁶⁾ 영어는 행정상(administration)의 공용어이다. 인종분포로는 중국계(76.4%), 말레이계(14.9%), 인도계(6.4%), 기타(2.3%)로 구성되며, 이 중에서 중국계가 가장 많아 실제 가정과 개인의 언어생활에는 중국어가 지배하지만 말레이어를 국어로 채택한 원인은 지리적, 정치적 이유이다. 싱가포르는 1965년 말레이에서 독립한 역사를 가지고 있고 지리적으로도 말레이 반도에 속해 있어서 지역과의 유대를 우선해 말레이어를 국어로 한다. 한편 중국계들 사이에서는 Hokkien, Teochew, Cantonese, Haaka, Hainanese, Foochow 등의 서로 다른 중국어 방언사용으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중국인들끼리도 영어를 사용할 경우가 있어 인구수는 언어정책에 별 영향을 주지 못한다. 인종, 종교, 문화, 성별에서의 비차별(nondiscrimination)을 규정한 헌법정신에 따라 언어의 평등한 권리를 인정하며 4개의 공용어는 의회와 법정에서 모두 사용 가능하나¹⁷⁾ 기록은 영어로만 허용된다. 언론매체에서 모든 공용어 사용이 허용되나 영어가 가장 우세하며, 중국어, 말레이어, 타밀어 순이다(Grimes 2000, The U.S. English Foundation 2000).

2. 전지역에서 소수민족언어 소극적 대응

어떤 국가는 소수민족언어에 대하여는 규제조항을 두고있지도 않지만(not excluded) 또한 어떤 특별한 장려정책도 없기 때문에(not encouraged) 많은 소수민족들의 문화와

languages of their choice in public educational institutions where that education is reasonable practicable. In order to ensure the effective access to, and implementation of, this right, the state must consider all reasonable educational alternatives, including single medium institutions. ...

15) Article 153: (1) Malay, Mandarin, tamil, and English shall be the 4 official languages in Singapore.

16) Article 153: (2) The national language shall be the Malay language and shall be in the Roman script: ...

17) Article 53(Use of Languages in Parliament): Until the Legislature otherwise provides, all debates and discussions in Parliament shall be conducted in Malay, English, Mandarin, or Tamil.

언어는 지구상에서 서서히 사라져갈 위기에 있기도 하다. 이런 언어들은 당연히 공용어의 지위를 받지 못하며 교육현장에서도 등한시되기 때문에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모국어로 교육을 받을 기회를 잃게 되고, 공적인 언어활동 영역에서도 다수민족의 언어로 언어활동을 해야한다. 따라서 문화와 언어를 유지하고 보존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없이 소수민족들은 자체적으로 기금을 마련해야 하는 입장에 처한다. 과거에 미국과 호주 내의 수많은 원주민 언어들은 이러한 소극적인 관심으로 사라져갔다. 또 소련연방에 속했던 많은 민족들이 이런 위치에 있었다. 자기 모국어가 아닌, 자기가 속한 국가의 공용어 사용은 교육현장, 기타 공적인 영역에서 필수이지만 비공식적인 개인의 활동 영역에서 공용어가 아닌 모국어 사용은 법으로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 (Grimes 2000, The U.S. English Foundation 2000).

그동안 민족독립과 언어회복 노력의 결과로서 이렇게 소외되어왔던 언어와 민족 공동체들이 현재는 독립을 이루고 독자적 언어권리를 회복했으며, 어떤 민족은 여전히 분쟁지역으로 남아 있기도 하다. 우즈베키스탄(Uzbekistan)은 1992년 헌법에서 민족언어에 대한 권리를 보장했고, 1995년에는 러시아어가 아닌 우즈베키스탄어(Uzbek)가 법적으로 공용어가 되었지만 언어의 실용성이 약하고, 2005년까지는 모든 영역에서 명실상부한 공용어의 지위에 올리기로 되어 있다(US Foundation). 몰도바(Moldova)는 4개의 언어 중 옛 루마니아어(Romanian)를 새 국가의 정체성을 상징하기 위해 명칭을 몰도바어(Modovan)로 바꾸었다. 타지크스탄(Tajikstan)은 9개의 언어 중 선언적으로는 타지크어(Tajiki)를 러시아어와 동등한 공용어로 사용하지만 아직도 비준을 기다리고 있고, 아제르바이잔(Azerbaijan)은 14개 언어 가운데 아제르바이잔어(North Azerbaijan)가 공용어이고 여러 소수인종의 언어를 제한적으로나마 허용하며 아르메니아와의 인종간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그루지아(Georgia)는 1995년의 헌법과 1997년의 법률(Laws on Culture and on Education)에서 그루지아어(Georgian)를 공용어로 선언하였다. 15개의 언어집단이 있는 네덜란드도 1998년의 소수민족언어교육법(Minority Language Teaching Act)을 통해 소수민족언어로의 교육을 허용하였다. 그 결과 네덜란드의 공용어는 네덜란드어(Dutch)이지만 West Frisian, Drents, Gronings, Westerwolds 등이 제한적으로나마 공용어가 되었다(Grimes 2000, The U.S. English Foundation 2000).

3. 제한된 지역에서만 소수민족언어 허용

인도에는 387개의 언어가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있으나 확정된 통계는 없다. 인도헌법(VIII소 Schedule)은 14개의 언어를 공용어(Schedule languages)로 규정하고

있다. 10억 인구 중 90%가 이 언어들에 집중되어 있다. 이 중 힌두어(Hindi)는 인도 중앙정부의 공용어이고 영어는 준공용어(Associate Official)이다. 1947년 영국으로부터의 독립 후 인도는 민족주의 정신에 따라 힌두어를 연방정부의 공용어로 정했다. 그러나 힌두어는 인도 전역에 고루 잘 알려져있지 않았고, 다른 지역 언어(Tamil, Bengali)의 반발을 불렀으며, 영어만큼 언어학적으로 아직 계발되지 못한 언어였다. 그 결과 힌두어가 영어의 위치를 대신하도록 하는 언어정책은 실패했고, 1967년에는 힌두어와 영어가 동시에 연방의 공용어로 채택되었다(Fasold 1984).

인도의 행정단위인 주 정부(state government)의 정치적 경계는 소수민족 언어집단 별로 나뉘어 있으며 각 주 정부마다 독자적으로 공용어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인도에서는 각 언어경계 안에서만은 소수민족 언어마다 모든 영역(domains)에서 독자적 언어권리가 보장된다. 개인의 언어행위 양상을 보면 영어, 힌두어, 개인이 속한 주 정부의 공용어, 개인의 모국어를 포함 개인마다 3-4개의 언어사용 환경(linguistic repertoire)이 되며, 이 가운데 영어가 가장 상위의 공용어 역할을 한다(Fasold 1984).

독일에는 공용어인 독일어 외에도 Danish, Northern Frisian, Sater Frisian, Sorbian 등의 소수민족언어가 그들 거주지역 안에서 법적으로 일정한 지위를 인정받고 있다.¹⁸⁾ 또한 독일에는 터키(100만), 유고(70만), 이탈리아(50만), 그리스(30만), 기타 스페인, 포르투갈,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프랑스 등지에서 온 약 400만 명 정도의 이민노동자(immigrant worker)들이 있어 이들의 모국어 사용이 표준 독일어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주고 있으며 독일 정부의 이들에 대한 정책은 아직은 배타적이다(Grosjean 1982). 독일은 소수민족의 언어를 보호하기 위한 국제법인 *European Charter for Regional or Minority Languages*를 서명(1992. 11. 5), 비준(1998. 9. 16), 발효(1999. 1. 1)시킨 가입국이기도 하다(Grimes 2000, The U.S. English Foundation 2000).

앞장에서 논의 한 벨기에의 언어사정 이외에도 스위스, 러시아, 스페인,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Bosnia and Herzegovina) 등이 마찬가지로 제한된 주나 지역에서만 언어권리를 허용하는 법규를 제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스페인에는 모두 11개의 언어가 있

18) "Bonner und Kopenhagener Erklarungen"(1955) 선언으로 덴마크에서는 German을, 독일에서는 Danish를 사용할 수 있게 하였고, *The 1990 Constitution of Schleswig-Holstein*으로 Danish와 Frisian의 권리를 부여하며, *German Unification Treaty*(1990)와 *Constitutions for Saxony and Brandenburg*(1992)와 *Preliminary Act on Administrative procedures for the Free State of Saxony of January 21, 1993, Section 3 and the Act on Administrative procedures for the Land Brandenburg*의 법으로 Sorbian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Grimes 2000).

으며 이 중에서 Basque, Galician, Gascon(Aranese), Catalan은 자치지역의 공용어로서 스페인어와 동등한 지위에 있다. 러시아 헌법(26조)은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원하는 국적과 언어를 자유롭게 선택하는 권리를 보장하며 각 자치주는 독자적 언어법을 제정하고 있다.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의 3개의 공용어인 보스니아(Bosnian), 크로아티아어(Croatian), 세르비아어(Serbian)는 국제적 뉴스만큼 정치적 분열과 민족의 무기가 되기도 하며, 32개의 언어 중 이탈리아어, 불어, 독일어, 세르비아어를 공용어로 하고 있는 이탈리아는 South Tyrol 지역에서 독일어를, Aosta Valley 지역에서는 불어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한다. 오스트리아 연방법(1990년 제정)은 슬로베니아어(Slovenian)와 크로아티아어(Croatian)를 지역의 공용어로 인정한다. 10개의 민족언어가 있는 핀란드는 핀란드(Finish)와 스웨덴어(Swedish)가 공용어이며, 크로아티아(Croatia)는 5개의 언어 중 크로아티아어(Croatian)과 이탈리아어(Italian)만이 공용어이다. 이처럼 자치주나 일정 지역에서만 소수민족 언어의 권리를 부여할 때는 그 공용어의 기능은 일정 지역에만 국한하고 해당 민족만의 모국어일 뿐이다 (Grimes 2000, The U.S. English Foundation 2000).

그밖에도 이러한 법적 취지를 입법화하고 있는 국가들로는 에스토니아(Estonia), 리투아니아(Lithuania), 마케도니아(Macedonia), 루마니아(Romania), 슬로바키아(Slovakia), 슬로베니아(Slovenia), 우크라이나(Ukraine) 등이다.

4. 전지역에서 소수민족언어 억제 또는 금지

인구 3,000만 명의 알제리(Algeria)는 아랍계(80%), 베르버계(19%), 유럽계(1%)로 구성되어 있으며, 17개 언어그룹 중에서 아랍어만이 유일한 국어이자 공용어이다. 132년 동안의 프랑스 통치 후 1962년 독립한 알제리는 문화의 정체성 회복을 철저한 아랍화(Arabization)로 그 이념을 삼았다. 최근까지 불어는 여전히 공통어로서의 역할을 하며 (전 국민의 20%가 불어 해득능력이 있음) 교육에서 포함되었으나 소수민족언어인 베르버(Berber)어는 국어에서 제외되었다. 1980년에는 베르베의 문화와 언어를 인정해줄 것을 요구하는 시위가 있었고, 1998년에는 Algerian Arabic Language Generalization Law의 시행으로 공적인 사용에서 불어와 베르버어를 전면 금지시켰다. 이 법의 시행으로 알제리에서는 언어와 인권을 쟁취하기 위한 민족주의 원리주의자들간의 전투가 계속되고 있다(<http://www.waac.org/>).

시리아는 1973년의 헌법에서 15개 언어 중 아랍어만을 공용어로 정했다. 시리아는 소수민족들의 문화, 종교, 풍습을 허용하지만 예외적으로 쿠르드족(Kurdish)에게는 그

들의 문화와 언어의 사용을 금지한다.

약 6,500만 명의 인구나 34개의 언어가 있는 터어키(Turkey)도 공용어는 터어키어(Turkish) 뿐이며,¹⁹⁾ 주요 소수민족으로는 쿠르드족(10-20%), 아랍족(1.5%) 등이며, 시리아와 마찬가지로 쿠르드족에게는 배타적인 정책을 쓴다. 터어키 헌법조차도 쿠르드족의 존재를 법으로 부정한다. 그들의 정치적, 경제적 활동 참여에는 간섭하지 않으나 공식적인 활동에서 쿠르드인임을 주장하거나 그 언어를 사용하면 검열, 박해, 또는 처벌을 받는다. 1991년까지는 사적으로도 쿠르드어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였지만 지금은 허용되고 있으며, 음악이외에는 방송, 학교, 정치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그 밖의 소수민족(그리스족, 아르메니언족, 유대족)에 대해서는 1923년의 Treaty of Lausanne에 따라 그들 지역의 학교에서만 그들의 언어를 교육할 수 있다.²⁰⁾

그리스는 인구 약 1,100만 명에 소수민족은 전 인구의 2%에 불과한 그 지역에서는 비교적 단일민족국가로서 12개 언어 중 그리스어(Demotiki version of Greek)만을 공용어로 한다. 종교 지역이외에는 어느 소수민족도 인정하지 않으며 소수민족의 정체성을 약화시키는 강력한 동화정책을 채택한다. 그리스에서는 루마니아어, 마케도니아어, 알바니아어의 사용은 금지된다. 위반자는 처벌된다. 1923년의 Treaty of Lausanne에 따라 터어키어만이 일부 허용될 뿐이다 (Kramer1999, <http://www.ethnologue.com>).

배타적인 언어정책을 규정하고 있는 또 다른 국가로는 라트비아(Latvia)가 있다. 약 250만 인구에 57%가 라트비아어이고 30%는 러시아어이다. 1991년 소련으로부터 독립했다. 소수민족 언어는 4개로 1998년의 헌법은 라트비아어를 유일한 공용어로 규정하며, 러시아어의 제한적 사용외에 다른 소수민족언어 사용은 불법이다. 취업으로 온 외국인조차도 라트비아어를 사용해야 하며, 언론, 지명, 인명, 각종 서류들도 라트비아어를 사용해야 한다. 공공기관이나 사설기관에의 취업에는 라트비아어 능력 인증서는 필수이고 인증서 분실 시 재발급은 안되며 다시 시험을 치러야 한다(Grimes 2000, The U.S. English Foundation 2000).

19) Article 3: The Turkish State, with its territory and nation, is an indivisible entity. Its language is Turkish.(Turkey Ministry of Foreign Affairs / <http://www.mfa.gov.tr/grupc/ca/cag/1142.htm>)

20) "As regards public institution, the Turkish Government will grant in those towns and districts, ... This provision will not prevent the Turkish Government from making the teaching of the Turkish language obligatory in the said schools"(The U.S. English Foundation 2000).

IV. 결론

세계적으로 단일문화에 단일언어로 구성되어 있는 나라는 그리 많지 않다. 대부분의 나라들은 적어도 둘 이상의 민족과 언어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 국가의 언어정책은 그 국가의 역사적, 지리적, 이념적, 인종적, 언어적 배경을 반영하며, 결코 언어학적 평가에 기준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살펴 본 세계 각 나라들의 언어정책과 법제화의 양상을 요약해보면, ① 민족언어(vernacularization)와 동화(assimilation)를 강조하는 정책과, ② 언어의 다원성(linguistic pluralism)을 인정하는 정책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단일민족, 단일문화, 단일언어권에 해당하여 국가의 정체성을 강조해야 하는 국가들, 특히 과거의 역사에서 그 민족의 세력이 약했거나, 억압받았거나, 새로 탄생하는 국가들은 민족주의와 정체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언어정책을 규정한다. 이에 따라 단일의 공용어 정책을 선호한다. 이런 유형의 국가들은 동화가 정책의 이념이며, 단일민족의 상징에 반하는 다른 소수민족 언어에 대하여는 배타적이다.

(2) 복수의 민족들과 언어로 구성되어 있는 국가들은 모든 소수민족들의 문화와 가치를 포용하는 방향으로 언어정책을 수립하며, 그렇지 않았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갈등과 분쟁보다는 공존을 선택한다. 이런 국가들은 복수의 공용어를 인정하며, 특징으로는 비록 법적으로는 동등한 언어권리를 인정하지만 실제의 언어생활에서는 서로 다른 민족을 대표하는 공용어들보다 상위인 중립적인 공용어가 존재한다.

언어정책 과정에서 어느 한 국가가 법적으로 언어에 부여하는 명칭으로 그 국가의 언어정책의 유형을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 국가가 채택하여 강조하고 싶어하는 이념이 언어의 명칭에 반영되어 나타나기 때문이다. 사회언어학 또는 언어사회학에서 말하는 국어(national language)와 공용어(official language)의 차이는 이념과 도구적 개념의 차이이다. 국어(민족어)의 의미는 정치적, 문화적, 사회적 개념을 담은 단위이고 그 기능은 국가의 정체성을 세우고 민족을 단결시키는 목적을 가진다. 반면에 공용어의 개념은 그 언어가 단순히 행정업무의 영역에서 사용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 기능은 상징적이기보다는 실용적 목적을 우선한다. 어느 언어도 물론 이 두 가지 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언어학적 구분은 정치적, 사회적 현실에서는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 국가들마다 강조하고 싶어하는 이념에 따라 국어와 공용어라는 명칭을 혼용해서 사용하기도 하기 때문이다(Holmes 2001).

예를 들면, 아랍화 정책으로 언어와 문화의 강력한 민족적 이념을 강조하고 싶어하는 알제리(Algeria)는 아랍어를 국어(national language)인 동시에 공용어(official language)로 선언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히브리어, 말레이시아의 말레이어, 인도네시아의 인도네시

아어, 아이티의 크리올어(Haitian Creole), 자이레(Zaire)의 Lingala, Swahili, Tshiluba, Kikongo 등 4개의 국어는 모두 국어의 개념이다. 국가의 역사적, 사회적, 민족적 사연을 담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탄자니아의 국어는 스와힐리어 하나 뿐이고 공용어는 스와힐리어와 영어다. 남태평양의 바누아투(Vanuatu)는 비슬라마어(Bislama)가 국어이고 공용어는 불어와 영어다. 한국과 같은 단일언어 국가들은 한 언어가 국어인 동시에 공용어이다. 그러나 복수 민족에 복수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국가들은 그들의 정치이념에 맞게 명칭을 조정할 수 있다.

이처럼 언어정책은 정치적 고려의 대상이다. 모든 국가들의 서로 다른 언어정책과 법제화의 모습은 곧 그 국가들의 정치형태, 언어양상, 종교, 인종분포, 국제화 수준, 타문화에 대한 태도, 그리고 인권수준을 그대로 보여주는 얼굴이기도 하다.

표 1. 국가별 공용어와 사용 언어 수

국가	국어 / 공용어	언어 수
Australia	English	237
Austria	German, Slovenian(regional)	8
Belgium	Dutch(Flemish), French, German	7
Bosnia-Herzegovina	Bosnian, Croatian, Serbian	3
Canada	Canada, English, French	85
Croatia	Croatian, Italian	5
Finland	Finish, Swedish	10
France	French	30
Germany	German	24
Greece	Greek	12
Hungary	Hungarian	11
Ireland	Irish Gaelic, English	4
Israel	Hebrew, Arabic, English	33
Italy	Italian, French(regional), German(regional), Serbo-Croatian	32
Japan	Japanese	14
Kenya	Swahili, English	60
Korea	Korean	1
Luxembourg	French, German, Luxembourggeois	3
Macedonia	Macedonian	8
Malaysia	Malay	39
Netherlands	Dutch, West Frisian, Drents, Gronings, Westerwolds	15
Nigeria	Edo, Efik, Adamawa, Fulfulde, Hausa, Idoma, Igbo, Yerwa Kanuri, Yoruba, English	305
Norway	Bokmal, Nynorsk	10
Papua New Guinea	Hiri Motu, Tok Pisin, English	832
Philippines	Tagalog(Pilipino), English	169
Russia	Russian	100
Singapore	Mandarin Chinese, Malay, Tamil, English	20
Slovenia	Slovenian, Hungarian, Italian	3
South Africa	Afrikaans, isiNdebele, Sepedi, Sesotho, sisSwati, Xitsonga, Setswana, Tshivenda, isiXhosa, isiZulu, English	28
Spain	Spanish, Basque, Galician, Gascon(Aranese), Catalan(regional)	11
Switzerland	French, German, Italian, Retho-Romance	9
Syria	Arabic	15
Tanzania	Swahili	135
Turkey	Turkish	34
United Kingdom	Welsh	13
United States	English(in Hawaii), Hawaiian(in Hawaii), Spanish(in New Mexico)	179
Vanuatu	Bislama, English, French	109
Yugoslavia	Serbian, Hungarian(regional)	10

표 2. 국가별 언어관련 법과 조항

국가	언어관련 헌법조항	기타 언어관련 법
Albania	Draft Constitution (1998) Articles 14, 18, 20, 28, 31	Education Act
Algeria	Constitution (1996) Article 3	<i>The Law on the Generalization of the Use of the Arabic Language (1991)</i>
Armenia	Constitution (1999) Articles 12, 15, 37	<i>The Law of the Republic of Armenia on Language (1993)</i>
Australia		National Policy on Languages (1987)
Austria	Constitution (1983) Articles 8, 14	St. Germain Treaty ("Staatsvertrag" STGBI No. 303/1920, Articles 66-68) Ethnic Groups Act ("Volksgruppengesetz" BGBl of July 7, 1976 No. 196/1976) Treaties or Statutes for minority protection: Vienna State Treaty (1955) Treaty of Brno of July 7, 1920 (BGBl No. 163/1921) Provincial School Act of the Burgenland (LGBl 1937/40)
Azerbaijan	Constitution (1999) Articles 21, 25, 45	<i>The Law of the Republic of Azerbaijan on the State Language (1992)</i>
Belarus	Constitution (1994) Articles 17, 50	<i>The Law on National Minorities of the Republic of Belarus (1992)</i> The Law about Language in the Belorussian SSR, January 1990
Belgium	Constitution (1994) Articles 1, 2, 4, 30, 43, 54, 129, 136, 138, 139	The 1963 Language Laws
Bosnia Herzegovina	The Constitution of the Federation of B&H (1995): Article 6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Srpska (1995): Articles 7, 34	
Bulgaria	Constitution (1991) Articles 3, 36	The Law on National Education The Law on Higher Education The Language Law (1991)
Croatia	Constitution (1998) Articles 12, 14, 15, 17, 24	The Constitutional Law on Human Rights and Freedoms and the Rights of National and Ethnic Communities or minorities in the Republic of Croatia (1991), amended in May 2000 <i>The Law on Upbringing and Education in the Language and Script of Ethnic minorities(2000)</i> <i>The Law on the Use of the Language and Script of Ethnic Minorities in the Republic of Croatia (2000)</i> The Law on Croatian Radio and Television The Telecommunications Act
Cyprus	Constitution (1960) Articles 2, 3, 11, 12, 28, 30, 171, 180, 189	
Estonia	Constitution (1992) Articles 6, 12, 21, 37, 51, 52	<i>The Law of the Republic of Estonia on Language (1995)</i> <i>The Law of the Republic of Estonia on Cultural Autonomy for National Minorities (1993)</i>

국가	언어관련 헌법조항	기타 언어관련 법
Finland	Constitution (2000) Sections 6. 17. 51. 122	
France	Constitution (1992) Article 2	
Georgia	Constitution of Georgia (1995) Articles 8. 14. 38. 85 Constitution of Abkhazia (1994) Article 6	
Greece	Constitution (1986) Articles 3. 5	
Estonia	Constitution (1992) Articles 6. 12 .21. 37. 51. 52	The Law of the Republic of Estonia on Language (1985) The Law of the Republic of Estonia on Cultural Autonomy for National Minorities (1993)
Finland	Constitution (2000) Sections 6. 17. 51. 122	Language Act (1922). Degree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language Act (1992) Act on the Use of the Sami Language before the authorities (1991)
France	Constitution (1992) Article 2	Law No 94-665 of 4 August 1994 relative to the Use of the French Language Circular of 19 March 1996 concerning the Application of Law No 94-665 of 4 August 1994 relative to the Use of the French Language
Georgia	Constitution (1995) Articles 8. 14. 38. 85 Constitution of Abkhazia (1994) Article 6	Law on Education (1997) The law on Self-government (1997) The draft Law on the State Language (currently negotiated)
Germany	Constitution (1998) Article 3	Bilateral declarations "Boner und Kopenhagener Erklarungen" (1955) Constitution of Schleswig-Holstein (1990) The Kiel Declaration of the Land government of Schleswig-Holstein on the Status of the Danish minority (1949) German Unification Treaty (1990) Constitutions for Saxony and Brandenburg (1992) Preliminary Act on Administrative procedures for the Free State of Saxony (1993)
Greece	Constitution (1986) Articles 3. 5	
Hungary	Constitution (1997) Articles 68. 32B	Act LXXVII of 1993 on the Rights of National and Ethnic Minorities Act LXXIX of 1993 on Public Education and its amendment in 1996 Act I of 1996 on Radio and Television Broadcasting Act CXXVI of 1996 on the National News Agency Act XVI of 1996 on the Criminal Code
India	Constitution (1996) Articles 29. 30. 120. 210. 343-351	The Official Language Act. 1963
Indonesia	Constitution (1945) Article 36	
Ireland	Constitution (1995) Articles 8. 18. 25	The Equality Language Bill (in the preparation process)
Italy	Constitution (2000) Articles 3. 6	Act No 482 of 15 December 1999 on Protection of Historic Linguistic Minorities statutes for Autonomous Regions in Italy

국가	언어관련 헌법조항	기타 언어관련 법
Kazakhstan	Constitution (1995) Articles 7, 14, 19, 41, 58, 93	The Law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on Languages in the Republic of Kazakhstan (1997) partial laws and orders on formation of state identity, on Courts and Judges, on customs, on model of contracts, on the Constitutional Council, on education, on internal military forces, on the procedure of settling of economic disputes,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language laws,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state program for developing of Kazakh and other ethnic languages
Kyrgyzstan	Constitution (1993) Articles 5, 15, 16, 32	Laws of the Kyrgyz Soviet Socialist Republic on the State Language of the Kyrgyz SSR (1989) Resolution on Entering into Force of the Law of the kyrgyz SSR on State language of the Kyrgyz SSR, (1989) Decree # 120 on Measures on Migration Processes Regulation in the Kyrgyz Republic, (94) Decision on Amending Article 5 of the Constitution of kyrgyz Republic, (1996) Decree # 21 on Further Development of the State language of the kyrgyz Republic, (1998)
Latvia	Constitution (1998) Articles 4, 14	State Language Law (1999)
Lithuania	Constitution (1992) Articles 14, 29, 37, 117	Republic of Lithuania Law on the State Language (1995) The Law on Ethnic minorities (1989)
Luxembourg	Constitution (1998) Article 29	
Macedonia	Constitution (1992) Articles 7, 48, 54	The law on Local-Self Government (52/95) The Census law on Population, Households, Dwellings and Agricultural Holdings (1994) The Law on Identity Cards (1995), The Law on Primary and Secondary Education (1995) The Law on Higher Education (2000), The Criminal Procedure Act (1997)
Moldova	Constitution (1994) Articles 10, 13, 16, 35, 78, 118	The Dniester Moldovan Act on the Languages of Dniester Moldavian Republic (1992) The Law on the status of the State Language in the Moldavian SSR (1989) The Law on the function of language on the territory of the MSSR (1989) The Law on Spoken languages on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Moldova
Netherlands		The Minority Language Teaching Act(OALT) (1998) The General Act on Administrative Law The Act on the of the Frisian language in Legal Affairs
Nigeria	Constitution (1999) Articles 15, 35, 36, 55, 97	
Norway	Constitution (1996) Articles 92, 110a	The Language Law (1980)
Pakistan	Constitution (1973) Articles 28, 251, 255	
Poland	Constitution (1997) Articles 27, 35, 233	The Act on the Polish Language (1999)

국가	언어관련 헌법조항	기타 언어관련 법
Portugal	Constitution (1997) Articles 9, 13, 74	Official Recognition of Linguistic Rights of the Mirandese Community (1999). Normative Document Num 35/99 (1999)
Romania	Constitution (1991) Articles 4, 6, 7, 13, 23, 32, 127, 148	The Law on National Minorities and Autonomous Communities Proposal by the Democratic Alliance of Hungarians in Romania(DAHR) (1993) The Law on Public Administration (1991) + Government's Emergency Decree 22/1997 The Law on Education (1999)
Russia	Constitution (1993) Articles 19, 26, 29, 68	Languages of the RSFSR People Act (1991)
Singapore	Constitution (1963) Articles 44, 53, 127, 152, 153A, 154	The Administration of Muslim Law Act Republic of Singapore (1968)
Slovakia	Constitution (1992) Articles 6, 12, 26, 34	Law of the National Council of the Slovak Republic from November 15, 1995 on the State Language of the Slovak Republic Act on 10 July 1999 on national Minority Languages Use
Slovenia	Constitution (1991) Articles 5, 11, 14, 61	Particular laws on bilingual documents, bilingual operations in the judiciary, bilingual transactions in municipal administration, on education, and mass media
South Africa	Constitution (1996) Sections 6, 9, 29-31, 35, 185, 186, 235	Multilingualism Bill (2000) Pan South African Language Board Act (1995) Republic Of South Africa South African Schools Bill (1996)
Spain	Constitution (1978) Articles 3, 20, 148	The Statute of Autonomy of Basque Country (1979) (NF) Basic Law of the Standardization of the Use of Basque (1982) The Statute of Autonomous Region of Aragon (1979) The Statute of Autonomy of Asturias The Statute of the Navarre Autonomous Community (1982) The Statute of Autonomy of Catalonia (4/1979) Act No 1 of 7 January 1998, on Linguistic Policy The Statute of Autonomy of the Balearic Island (2/1983) The Statute of Autonomy of the Valencian Community (5/1982) the Galician Autonomy Statute (1982) the Galician Linguistic Standardization Act (1983)
Sri Lanka	Constitution (1978) Articles 12, 14, 18-25	The Official Language Act of 1956 Reasonable Use of Tamil Act of 1956
Sudan	Constitution (1998) Articles 3, 27	
Sweden	Constitution (1989) Articles 2	New legislation (1999)
Switzerland	Constitution (2000) Articles 4, 18, 69, 70	The Federal Act on Financial Aid to Support and Protect Romansh and Italian Language and Culture (October 6, 1995) The Federal Act on Radio and Television Broadcasting (SR 748.40) The Publication Act (SR 170.512)

국가	언어관련 헌법조항	기타 언어관련 법
Switzerland	Constitution (2000) Articles 4, 18, 69, 70	The Federal Act on Financial Aid to Support and Protect Romansh and Italian Language and Culture (October 6, 1995) The Federal Act on Radio and Television Broadcasting (SR 748.40) The Publication Act (SR 170.512) The Federal Act on Administration Procedures, Article II, General Regulations (SR 172.021) The Federal Act on Civil Proceedings and Criminal Proceedings (SR 273) The Act on Federal Legal Care (SR 173.110)
Syria	Constitution (1973) Articles 4	
Tajikistan	Constitution (1994) Articles 2, 65, 88	Language Act of the Tadjik Soviet Socialist Republic (1989) Resolution # 459?? the Program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Tajikistan on Development of the State language and of other languages in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Tajikistan (1997) Program of the Republic of Tajikistan on Development of the State Language and of Other Languages in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Tajikistan (adopted by the Resolution #459)
Turky	Constitution (1995) Articles 3, 10, 14, 26, 28, 42	Excerpts from relevant laws and degrees.
Ukraine	Constitution (1996) Articles 10, 53, 92, 103, 138, 148	Law of Ukraine on Development and Use of Languages in Ukraine
	Constitution of the Autonomous Republic of Crimea (adopted on October 21, 1998)	The Law in National Minorities (1992)
United Kingdom		Welsh Language Act 1993
Uzbekistan	Constitution (1992) Articles 4, 18, 115	Law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On The State Language Law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on the State Language (1989), No 3561- Law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on Amendments and Complements to the Law On State Language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1995) Law on Citizenship. (1992)
Yugoslavia	Constitution (1992) Articles 11, 15, 20, 23, 45, 46, 47, 48, 49, 50	The Law on the Official Use of Language Federal and Republic laws, other legal documents

출처: The U.S. English Foundation (2000).

참고문헌

- Bernsten, Jan. 2001. English in South Africa: Expansion and nativization in concert. *Language Problems and Language Planning* 25(3), 219-235.
- Cobarrubias, J. 1983. Ethical issues in status planning. In J. Cobarrubias and J. A. Fishman (eds.) *Progress in Language Planning: International Perspectives*. The Hague: Mouton.
- Comrie, Bernard, Stephen Matthews, and Maria Polinsky (eds.) 1996. *The Atlas of Languages: The Origin and Development of Languages Throughout the World*. New York: Facts On File.
- Crewe, William (ed.) 1977. *The English Language in Singapore*. Singapore: Eastern Universities Press.
- Crystal, David. 1997. *English as a Global Langua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eutsch, K. W. 1968. The trend of European nationalism - the language aspect. In Joshua A. Fishman (ed.) *Readings in the Sociology of Language*, 2 vols. The Hague: Mouton.
- Fasold, Ralph W. 1984. *The Sociolinguistics of Society*. Oxford: Basil Blackwell.
- Fishman, Joshua A. 1972. *Language in Sociocultural Change: Essays by Joshua A. Fishman*. Selected and Introduced by Anwar S. Dil.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Fishman, Joshua A. (ed.) 1974. *Advances in Language Planning*. The Hague: Mouton.
- Fishman, Joshua A. 1981. Language policy: Past, present, and future. In C. A. Ferguson and S. B. Heath (eds.) *Language in the USA*.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Fishman, Joshua A., Robert L. Cooper, and Andrew W. Conrad (eds.) 1977. *The Spread of English*. Rowley, MA: Newbury House.
- Fishman, Joshua A., Charles A. Ferguson, and J. Das Gupta (eds.) 1968. *Language Problems of Developing Nations*. New York: John Wiley.
- Godby, Carol J., Rex Wallace, and Catherine Jolley (eds.) 1982. *Language Files*. Ohio: Advocate Publishing Group.
- Grimes, Barbara F. (ed.) 2000. *Ethnologue: Languages of the World*. 14th Edition. SIL International. Website: <http://www.ethnologue.com>.

- Grosjean, F. 1982. *Life with Two Language: An Introduction to Bilingualism*.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Hamers, J. F. and Michael H. A. Blanc. 1989. *Bilinguality and Bilingualism*.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olmes, Janet. 2001. *An Introduction to Sociolinguistics*. 2nd Edition. Essex, England: Pearson Education Limited.
- Hudson, R. A. 1980. *Sociolinguis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aryolemou, Marilena. 2001. From the linguistic liberalism to legal regulation: The Greek language in Cyprus. *Language Problems and Language Planning* 25(1), 25-50.
- Karoulla-Vrikki, Dmimtra. 2001. English or Greek language? State or ethnic identity? The case of the courts in Cyprus. *Language Problems and Language Planning* 25(3), 259-288.
- Kramer, Christina. 1999. Official language, minority language, no language at all: The history of Macedonian in primary education in the Balkans. *Language Problems and Language Planning* 23(3), 233-250.
- Mac Donnacha, Joe. 2000. An integrated language planning model. *Language Problems and Language Planning* 24(1), 11-35.
- Papapavlou, Andreas N. 2001. Linguistic imperialism? The status of English in Cyprus. *Language Problems and Language Planning* 25(2), 167-176.
- Reagan, Timothy. 2001. The promotion of linguistic diversity in multilingual settings: Policy and reality in post-apartheid South Africa. *Language Problems and Language Planning* 25(1), 51-72.
- Rustow, Dankwart A. 1968. Language, modernization, and nationhood: An attempt at typology. In Joshua A. Fishman, Charles A. Ferguson, & Das Gupta (eds.) *Language Problems of Developing Nations*. New York: John Wiley & Sons.
- The U.S. English Foundation. 2000. Washington, D.C. Website: <http://us-english.org/foundation/countries.asp>.
- Wardhaugh, Ronald. 1992. *An Introduction to Sociolinguistics*. Second Edition. Oxford: Blackwell.
- Wright, Laurence. 2002. Why English dominates the central economy: An economic perspective on 'elite closure' and South African language policy. *Language Problems and Language Planning* 26(2), 159-177.